

[보상청구쟁점] 인수 합병이 아닌 사업부문 양수도 vs 인수 합병과 구별 - 전직 회사의
종업원 발명자가 소속 변경 후 양수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 가능성 여부: 서울중
양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550620 판결



포괄승계인 합병과 달리 사업부문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제한을 받는 특별승계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보상 문제가 합병의 경우 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어려운 법적 쟁점이 많은 사건인데, 판결내용 중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에 자산의 매각과 양도, 부채의 인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형상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 특정승계 조항에 해당합니다.

제2.1조 자산의 매각과 양도(Sale and Transfer of Assets)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종결시, 현대디스플레이는 매수인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 재산, 권리와 이권을 매각, 양도, 이전, 이관 및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현대디스플레이로부터 매수, 수령, 취득 및 인수하고, 이는 제2.4조에 정의된 제외자산을 제외한 아래의 기재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통칭하여 "양도대상 자산")을 포함하며, 장부에 반영 여부 및 2002. 6. 30. 이전 또는 이후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c) 사업에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중이거나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지식재산을 포함한 매도인의 무형자산[지식재산의 목록과 내역은 부록 2.1(c)에 기재된 바와 같다].

(d) 현대디스플레이가 당사자이고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모든 계약(매매계약 및 사업관련 계약 포함)("승계계약", "Transferred Contracts")에 대한 현대디스플레이의 모든 이권(모든 수익권, 권리 및 의무 포함)으로,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록 2.1(d)에 기재된 계약들을 포함한다.

제2.3조 인수부채(Assumed Liabilities)

매수인은 종결일부터(with effect from the Closing Date) (i) 종결일 현재의 유동부채, (ii) 종결일 또는 종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승계계약에 따른 채무 및 부채(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arising on or after Closing Date under the Transferred Contracts), (iii) 제 10.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승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 (iv)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약관에 따라 현대디스플레이 또는 하이닉스가 제공한 제품보증을 인수한다.

한편,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명시적 조항을 두었습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만을 구속할 뿐 직무발명자를 포함하는 제3자를 구속하는 효력까지는

없습니다만, 위 사업 양수도 계약이 포괄승계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제9.7조 양도대상 자산 및 승계계약(Transferred Assets and Transferred Contracts)

(d) 매수인은 승계계약에 따른 현대디스플레이의 미이행 의무사항을 종결일로부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한다. 다만,

(i)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종결 전에 발생하거나 종결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강제하지는 아니한다.

(ii)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x) 종결 전에 승계계약과 관련하여 현대디스플레이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발생한 작위, 해태, 불이행, 부작위(any act, neglect, default or omission in respect of any of the Transferred Contracts committed by Seller, or occurring, prior to Closing), (y) 본 계약에 대한 제3자의 동의나 합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또는 본 계약이나 그 종결로 인하여 양도대상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나 기타 손실 및 (z) 종결 전 승계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나 부채(any obligations or liabilities arising under the Transferred Contracts before the Closing)에 대하여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현대디스플레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대하여 매수인을 면책하고 매수인을 보호한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은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경우와 같은 포괄승계 계약으로 볼 수 없고, 특정승계에 의한 자산매매계약이므로, 위 계약서에서 승계대상으로 기재하지 않았던 직무발명보상채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존속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제1.1조에서 계약(Contract)을 합의, 양해, 약속, 협정, 복리후생제도 또는 확약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규정이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사용자인 하이닉스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신고 및 승계 절차,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제정한 회사의 근무규정인 점,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직무발명의 유형별로 보상금 지급의무와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은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 회사가 현대디스플레이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이닉스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그대로 승계·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종결일(2003. 1. 22.) 직후인 2003. 2. 5. 직무발명보상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하이닉스가 원고와 사이에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체결한 약정 내지 계약의 일종이라고 보기 어렵고(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약정채권이라기 보다는 법정채권으로 봄이 다수의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참고로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현재 존속하는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를 인정합니다. 종전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 합병계약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벤처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회사에 양도한 직무발명자는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23년/변호사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